

# 인터넷신기술연구소 규정

제정 : 2009. 05. 18.

개정 : 2015. 02. 06.

개정 : 2015. 08. 07.

개정 : 2022. 08. 05.

담당자 : 교학팀(02-950-5406)

## ----- 목 차 -----

제1조(목적)	제2조(명칭)	제3조(소제지)	제4조(사업)
제5조(조직)	제5조2(임무)	제6조(임원)	제7조(연구원)
제8조(임원위원회의 구성과 운영)	제8조2(운영위원회의 역할)	제9조(보고)	제10조(재정)
제11조(회계연도)			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한국성서대학교(이하 “본 대학교”라 한다) 설립이념인 밀알정신을 바탕으로 정보통신 분야에서 창의적이고 전문적인 학문을 연구하고 차세대 IT 전문인력 양성 및 인터넷 첨단기술을 개발하여 국가 발전을 도모하고자 설치하는 인터넷신기술연구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(개정2015.08.07)

**제2조(명칭)** 본 연구소는 한국성서대학교 부설 인터넷신기술연구소 (Institute for New Technology Internet 이하 "본 연구소"라 한다)라 칭한다. (개정2015.08.07)

**제3조(소제지)** 삭제 (개정2015.08.07)

**제4조(사업)** 본 연구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.

1. 인터넷 신기술 동향분석 및 연구개발
2. 학술세미나 및 특강 개최
3. 소프트웨어 경진대회 개최
4. 학술지 및 보고서 발간
5. 국내외 인터넷 신기술 관련 산학연 공조체제 구축
6. 기타 연구소의 목적과 관련된 사업

**제5조(조직)** ① 연구소에는 연구소장과 연구위원을 두고 필요에 따라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. (개정 2015.08.07)

② 연구소장은 총장이 임명하고 연구위원은 연구소장이 본교 컴퓨터소프트웨어학과 교원 중에서 임명한다. 연구소장과 연구위원의 임기는 각 2년으로 한다. (개정2015.08.07)

**제5조2(임무)** ① 연구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고 연구소의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. (개정2015.08.07)

② 연구위원은 연구수행 및 연구소 운영을 담당한다. (개정2015.08.07)

③ 사무직원은 연구소장 및 연구위원의 업무를 보좌하고 연구소 사무 등 제반업무를 담당한다. (개정2015.08.07)

**제6조(임원)** 삭제 (개정2015.08.07)

**제7조(연구원)** 삭제 (개정2015.08.07)

**제8조(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)** ① 본 연구소에는 연구소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 (개정2015.08.07)

② 위원회는 소장, 연구위원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(개정2015.08.07)

③ 위원장은 연구소장이 되며 연구위원은 연구소장이 임명한다. (개정2015.08.07)

④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본교 「위원회 관리 규정[규정분류코드 2-1-3-2]」에 따른다. (개정2015.08.07)

**제8조의2(운영위원회의 역할)**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 (개정2015.08.07)

1. 위원회 규정의 제정 및 폐지 (개정2015.08.07)
2. 연구기금의 조성 및 관리 (개정2015.08.07)
3. 연구계약 체결 (개정2015.08.07)
4. 연구과제의 선정 및 평가 (개정2015.08.07)
5. 기타 연구소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(개정2015.08.07)

**제9조(보고)** 삭제 (개정2015.08.07)

**제10조(재정)** ① 연구소의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재정은 본 대학교에서 지급하는 연구보조금과 기부금 및 사업수입금으로 충당한다.

② 연구원의 연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은 한국성서대학교의 학술연구비 지급 및 관리규정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.

③ 예산 및 결산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략기획실장에게 보고하되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(개정2015.08.07)(개정 2022.08.05.)

**제11조(회계연도)**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본 대학교의 회계연도와 같다.

## 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9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5년 02월 06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5년 08월 07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08월 05일부터 시행한다.